



## 대학발전 연구비 지급 규정

|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|
| 규정번호     | 2-4-32     |
| 제정일자     | 2019.11.14 |
| 개정일자     | 2021.08.20 |
| 책임부서/팀·계 | 기획처        |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의 대학발전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대학발전 연구비라 함은 대학 및 학과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연구 활동, 대학평가, 재정지원 사업 유치를 위한 자료조사 및 계획·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에 포함된 경비를 말한다.
- 연구 활동을 위한 내부연구원은 신안산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하며, 외부연구원은 총장의 승인으로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.

**제3조(지급 기준)** 대학발전 연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.

- 대학발전 연구비는 수당형식으로 지급할 수 없다.
- 내외부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비,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 할 수 있으며, 지급 기준은 재무회계규정을 준용한다.
- 전 2호의 경비지급은 정당한 영수증 또는 법인카드 결제에 의거 집행하며, 외부인사의 경우 개인카드집행 영수증에 근거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한다.

**제4조(보고서 작성 원고료)** 내외부 연구위원이 연구를 위한 세미나, 워크숍 발표자료 작성 및 연구 결과 보고서 작성에 따른 원고료 지급기준은 (별표1)의 기준에 따른다.

**제5조(연구비 지급시기 및 방법)** ① 대학발전 연구비는 영수증 제출 또는 연구 보고서 제출 후 지급한다.

② 정책연구관련 경비는 연구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.)

**【 대학발전 연구비 지급기준 】**

| 구 분    | 지급액                    | 지급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PPT 자료 | A4 용지 1매당<br>30,000원이내 | ▪ 연구활동에 참여한 교직원 및 외부인사로<br>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 |
| 보고서 자료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